

의안번호	제 831 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423회)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1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의자 : 최정훈,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제안이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시 확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업 위탁 시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 나. 관련부서 : 행정국 도민소통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00호, 2024. 1. 16.]

-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19998호, 2024. 1. 16.]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 추진 기반 조성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나. 추계결과 : 94,100천원

- 지원사업비 : 94,100천원(약19,000천원/매년)

※ 현재지원사업을 근거로 추계, 추가사업 발굴 시 별도 예산심의를 통해 추계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8,100	19,000	19,000	19,000	19,000	94,100
평화통일 심포지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한마음통일 워크숍	8,100	9,000	9,000	9,000	9,000	44,100
재원 조달	18,100	19,000	19,000	19,000	19,000	94,100
도비	18,100	19,000	19,000	19,000	19,000	94,100